
2020년 한국개발연구원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2020. 12

주 관 : 인 권 경 영 위 원 회

실 시 : 제 도 기 획 팀

목 차

I. 인권영향평가 실시 개요	2
II. 인권영향평가 결과	6
III. 총평 및 권고사항	19
〈붙임〉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표(답변결과 포함)	22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표(답변결과 포함)	27

I. 인권영향평가 실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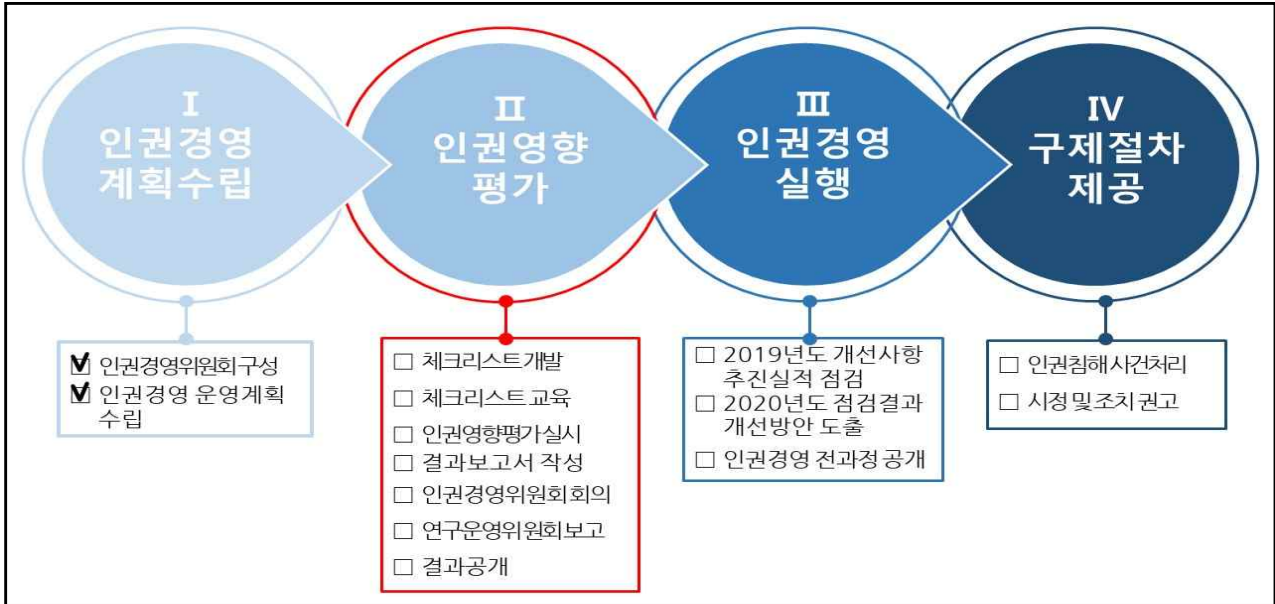
사회적 책무	연구원은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 수행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필요
사회적 가치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그 결과를 연구원 운영·관리 전반에 반영함으로써 인권존중에 대한 실천력 확보 및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선도적으로 이행

□ 개 요

- (인권영향평가 진행 절차) 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한 체크리스트 사전검토 후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연구원 경영 및 운영 전반에 반영하여 인권경영의 실효성 확보
 - ① (체크리스트 개발) 인권경영위원회의 검토사항과 부서별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체크리스트 개발 및 최종결정
 - ② (체크리스트 교육) 체크리스트 점검부서 팀장 및 담당자 교육 실시
 - ③ (인권영향평가 실시)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지표별 책임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서면점검 실시
 - ④ (결과보고서 작성)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서 객관성 담보를 위한 외부 인권전문가 검토자문 실시
 - ⑤ (인권경영위원회 회의 개최) 인권경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0년도 인권경영 추진결과 및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의 보고·심의
 - ⑥ (연구운영위원회 보고) 연구운영위원회를 통해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및 개선사항 보고
 - ⑦ (결과공개) 연구원 홈페이지에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공개



2020년도 「인권경영」 추진절차



□ 인권영향평가 대상

○ ‘기관운영 측면’과 ‘주요사업 측면’을 평가대상으로 함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기관 운영의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로, 기관의 경영활동에 잠재하는 인권리스크를 파악하여 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인권위 매뉴얼」을 기반(10개 분야, 34개 항목, 162개 지표)으로 연구원의 실정을 반영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
 - KDI 「인권경영 헌장」과의 관련성, 인권경영위원회 검토사항, 관련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6개 이슈에 총 48개 지표로 구성 (2020년 신규지표 3건 추가, 2019년 45개 → 2020년 48개)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기관이 수행하는 특정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로, 사업이 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인권적 영향력을 측정하고 인권리스크를 분석하여 부정적 영향을 예방할 수 있음
 - 연구원 수행사업 중 중요사업을 선정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평가담당자 및 인권경영위원회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체크리스트에 대한 수용성 및 객관성 확보
 - 사업의 중요도 및 국민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기본연구사업’ 과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을 2020년도 주요사업 인권 영향평가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총 17개 지표로 구성 (2019년 지표 중 2건 삭제 및 2020년 신규지표 3건 추가, 2019년 16개 → 2020년 17개)

- (평가내용 및 점검부서)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의 지표별 책임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서면 점검 실시

다. 평가 주관

- 한국개발연구원 인권경영위원회

라. 주요 진행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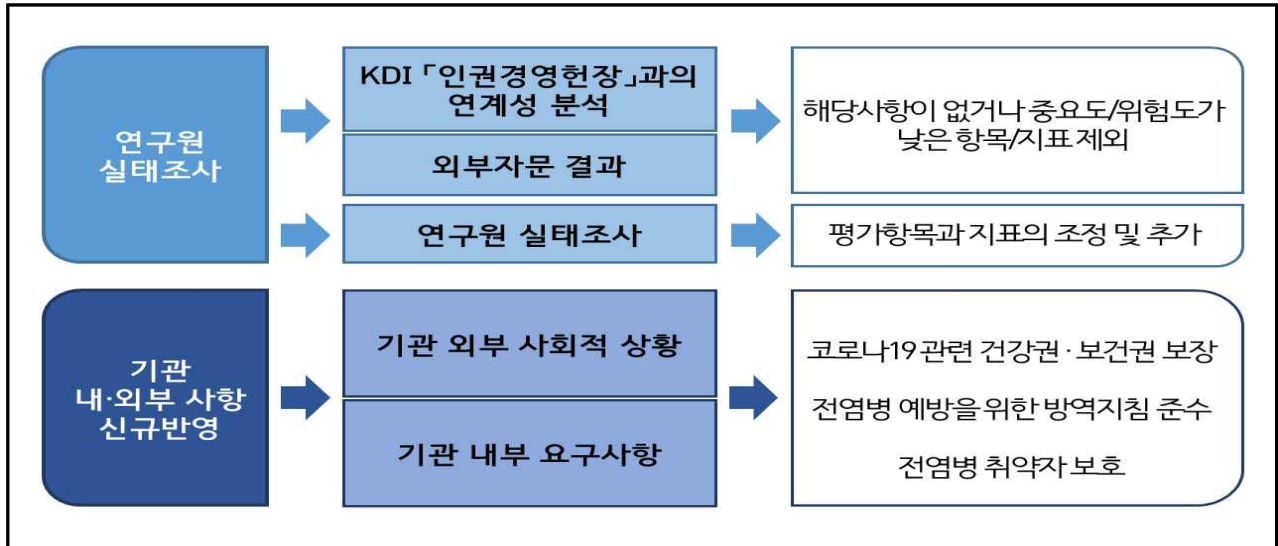
연번	활동	10월				11월				12월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	인권경영위원회 1차 회의 개최 (2019년 인권경영 추진 경과보고 및 2020년 인권경영 추진 계획(안) 심의)												
2	2020년 인권경영 실시 계획(안) 승인												
3	체크리스트 확정 (연구운영위원회 승인/확정)												
4	2020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안) 승인 (단계별 세부 운영(안)에 대한 승인)												
5	체크리스트 교육 (제도기획팀 주관으로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담당자 대상 체크리스트 점검관련 교육 실시)												
6	인권영향평가 실시 (기관운영과 주요사업으로 평가항목 이원화, 관련부서 체크리스트 서면점검 실시)												
7	결과보고서 작성												
8	인권경영위원회 2차 회의 개최 (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한 결과보고서 보고 및 심의)												
9	경영진 보고 및 승인 (연구운영위원회를 통한 결과보고서의 경영진 보고 및 승인)												
10	결과공개 (인권영향평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평가내용 및 방법

구분	기관운영	주요사업	
선정 절차	전년도 체크리스트 기반 내·외부 상황을 고려해 지표 조정	연구원 사업 중 인권적 영향력이 큰 사업 선정 ▼ 선정된 사업에 대한 리스크 분석 및 관련부서 제출의견을 바탕으로 체크리스트 작성 ▼ 인권경영위원회 검토 ▼ 연구운영위원회 승인 ▼ 최종확정	
	사회적 상황 및 기관 내부 요구사항 반영	선정 분야에 대해 연구운영위원회 최종 논의 후 각 분야별 지표 구체화	
선정 결과	6개 분야, 10개 항목, 48개 지표	기본연구사업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인권위 매뉴얼의 체크리스트 바탕 연구원 실정 반영하여 재구성	연구원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이자 연구원의 대표사업 사업수행이 광범위 하여 인권적 영향력이 매우 큼	연구원 정관에 명시된 사업 직접교육과 강사를 통한 교육으로 피교육자의 인권과 직접적으로 연관
선정 사유	기관 내·외부 요구사항 적용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인권경영위원회
	코로나19 관련 건강권·보건권 보장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 준수 전염병 취약자 보호	기관의 주력사업 또는 대표사업 중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권고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적 특성과 직간접적 방법으로 교육을 전달하는 업무 특성상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적 고려 요소가 다수 존재함
체크 리스트	6개 분야, 10개 항목, 48개 지표	2개 분야, 17개 지표	
	인권위 매뉴얼의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연구원 실정을 반영하여 재구성	기본연구사업,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에 대한 지표를 자체개발	
점검 부서	제도기획팀 인사팀 운영지원팀 시설팀 미디어운영팀	연구사업팀 경제정보센터 경제교육실	

II. 인권영향평가 결과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 설정



□ 분야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소관부서: 제도기획팀)**

항목	평가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인권존중 정책선언	1	연구원은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인권경영헌장)을 했다.					
	2	인권정책선언은 연구원의 최고위 수준에서 표명된 것이다.					
	3	연구원의 인권정책선언은 연구원 내부와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4	연구원의 인권정책선언은 연구원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인권 현안이 무엇인지가 표명되었다.					
	5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6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소 계							
인권영향 평가 정기적 실시	1	연구원은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2	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연구원 내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3	연구원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를 한다.					
소 계							

항목	평가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인권경영을 제도화할 필요조치	1	연구원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2	연구원은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					
	3	연구원은 인권준수 감시장치를 마련했다.					
	4	연구원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소 계							
구제절차 마련	1	연구원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2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3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4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소 계							
합 계							

□ 분야 2. 강제 노동의 금지 (소관부서: 인사팀)

항목	평가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강제노동 금지	1	연구원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2	연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직원이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3	연구원은 직원의 행동을 제약할 목적으로는 각종 신분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4	연구원은 직원이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 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5	연구원은 직원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6	연구원은 직원에게 부채를 안긴 후 빚을 담보로 한 강제근로를 실시하지 않는다.					
	7	직원은 합리적 수준의 사전 통지 이후에 연구를 그만 둘 수 있다.					
	8	임신, 기저질환, 자녀돌봄 등으로 코로나 대응에 취약한 직원을 배려한 인사·복무제도를 운영한다. (신규 지표)					
합 계							

□ 분야 3. 아동노동의 금지 (소관부서: 인사팀)

항목	평가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연소자 고용 금지	1	연구원은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2	연구원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3	연구원은 교육프로그램을 병자하여 고용이 금지된 연소자를 고용하는 일이 없다.					
	4	연구원은 서류를 통해 대상자의 나이를 확인한 후 고용하며, 신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확실성을 검토한다.					
합 계							

□ 분야 4. 산업안전 보장 (소관부서: 시설팀/운영지원팀)

항목	평가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사무실 안전	1	연구원은 사무실의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하도록 유지한다. (시설팀)					
	2	연구원의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있지 않으며, 항상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시설팀)					
	3	연구원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음용수, 세면대, 의자, 음식보관시설, 숙소,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시설팀)					
	4	연구원은 유해물질로부터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치한다. (시설팀)					
	5	정부의 방역방침을 준수하여 사업장 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시설팀, 보안환경팀) (신규 지표)					
소 계							
교육, 건강 진단 등	1	연구원은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시설팀/운영지원팀)					
	2	연구원은 직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건강 진단을 실시한다. (운영지원팀)					
	3	직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코로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운영지원팀) (신규 지표)					
소 계							
합 계							

□ 분야 5. 소비자인권 보호 [소관부서: 미디어운영팀]

항목	평가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고객 사생활 보호	1	연구원은 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연구원이 수집·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고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공개되었다.					
	3	고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4	고객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5	고객 정보는 소비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6	고객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합 계							

□ 분야 6. 직원인권 보호 [소관부서: 인사팀/운영지원팀]

항목	평가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폭력 예방과 구제 조치	1	연구원은 나이, 성별 등을 이유로 직원에게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인사팀)					
	2	연구원은 규정에 없는 징벌적 성격의 교육훈련을 수행하지 않는다. (운영지원팀)					
	3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인권침해를 다루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인사팀)					
	4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인권침해를 다루는 구제절차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 (인사팀)					
	5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운영지원팀)					
합 계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점검결과 요약

-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직원인권 보호 분야에서는 모든 평가지표에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 것으로 평가
- 2020년도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새롭게 신설된 신규지표 3건에 대해서도 모두 보완은 필요 없는 것으로 평가됨.
-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소비자인권보호 분야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일부 있음을 확인
- 다만,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분야에서 2019년도에는 “보완필요” 사항이 총 4건 도출되었으나, 2020년도 점검시에는 2건으로 감소

	분야 ¹⁾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			
2	강제노동의 금지	√				
3	아동노동의 금지	√				
4	산업안전 보장	√				
5	소비자 인권보호		√			
6	직원인권 보호	√				
합 계		4	2			

❖ 분야 내 항목별 평가결과

-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분야에서 구체절차마련과 관련하여 2개 지표 (“구체절차에 따른 결과를 당사자에게 신속하게 공개한다” 등)에 보완사항이 있음을 확인
- ‘소비자인권보호’ 분야에서 1개 지표(“고객정보를 수집할 때 그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와 관련하여 보완사항 확인

1) 인권위 매뉴얼에 제시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의 표준 체크리스트 분야 중 KDI 「인권경영 현장」과의 연계성 분석 및 외부자문결과를 통해 해당사항이 없거나 중요도/위험도가 낮은 항목/지표 등 5개 분야를 제외하고, 1개 분야를 추가하였음. ‘폭력예방과 구제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원인권 보호’ 분야를 별도로 추가하였음.

분야	항목	세부지표 평가결과			
		세부 지표수	예	보완 필요	해당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1.1 인권존중 정책선언	6	6	-	-
	1.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3	3	-	-
	1.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4	4	-	-
	1.4 구제절차 마련	4	3	2	-
	소계	17	16	2	-
2. 강제노동의 금지	2.1 강제노동 금지	8	8	-	-
	소계	8	8	-	-
3. 아동노동의 금지	3.1 연소자 고용 금지	4	4	-	-
	소계	4	4	-	-
4. 산업안전 보장	4.1 사무실 안전	5	5	-	-
	4.2 교육, 건강진단 등	3	3	-	-
	소계	8	8	-	-
5. 소비자인권보호	5.1 고객 사생활 보호	6	5	1	-
	소계	6	5	1	-
6. 직원인권 보호	6.1 폭력 예방과 구제조치	5	5	-	-
	소계	5	5	-	-
합계		48	45	3	

❖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보완필요사항

-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보완필요)
-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보완필요)
- 기명으로 접수된 경우 관련기준에 따라 조치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
- 2020년도는 인권경영 실행 2차년도 해로 아직까지는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으나, 향후 인권침해 발생시 해당 인권피해가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할 것에 대비한 각 경영 분야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

[인권경영위원회 검토의견]

- 한국개발연구원은 ‘인권경영 현장’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권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운영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체계적인 준비와 적절한 개선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특히, 평가 지표 측면에서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부문별로 지표를 분류하여 각 지표별로 인권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후년도 인권경영계획에 반영하는 체계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구축한 점은 높이 평가됨.
- 또한, 2020년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관련 부서의 운영 현황과 이에 따른 답변 결과의 진위 여부가 적절하게 검증되었으며 이에 따른 개선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음. 하지만 2021년 개선 방안 마련 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보완 및 신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인권영향평가 시 평가 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인권 사각지대가 없는지 세심한 주의와 점검 필요
- 인권경영 운영을 위한 장치 및 지침의 체계적인 구축도 필요하겠지만, 한국개발연구원 내의 구성원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 필요

❖ “5. 소비자인권보호” 보완필요사항

- 고객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보완필요)
- 서비스 활용 동의에 대한 내용을 이용자에게 안내하여 선택적 수집하도록 수정 보완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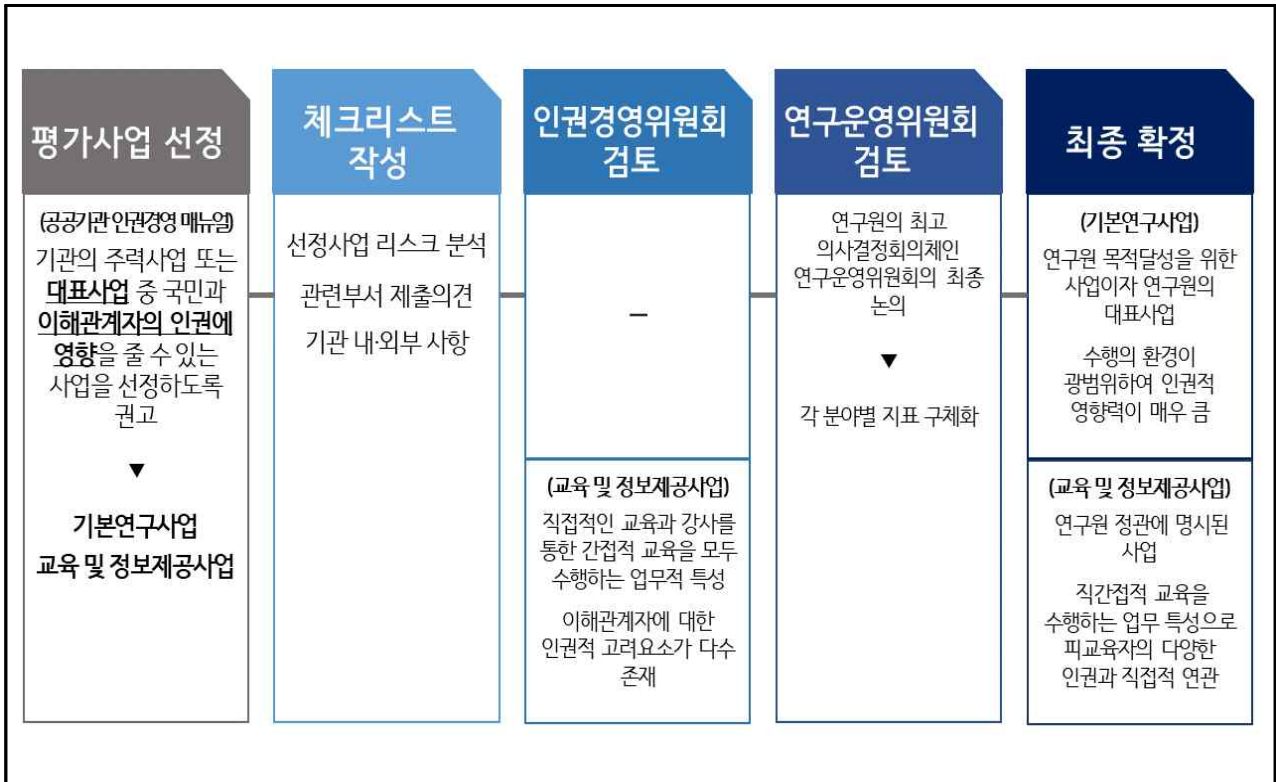
[인권경영위원회 검토의견]

- 평가지표 문항 중 강제노동이나 직원인권보호 분야의 경우 보다 KDI의 현실에 맞게 문항 수정이 이뤄져야 현실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및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방지 교육 강화가 필요
- 고객 정보의 선택적 수집과 관련하여 고객이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2019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중 “보완필요” 지표에 대한 개선 결과

분야	평가결과	개선계획	개선결과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p>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할 필요</p>	<p>갑질피해 신고지원제도, 성희롱성폭력 고충신고 제도, 민원제도 등 주요 사안별로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질피해 신고지원제도, 성희롱성폭력 고충신고제도, 민원제도 등 주요 사안별로 구제절차 마련 - 연구원 홈페이지, 인트라넷 등을 통해 구제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이용접근성 제고
	<p>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할 필요</p>	<p>연구원 홈페이지, 인트라넷 등을 통해 구제절차를 제공할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 발생시 사안에 따라 1단계(기본절차)와 2단계(고도화 절차)에 따라 구제절차를 달리 적용함으로써 신속성 제고
	<p>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필요</p>	<p>기명으로 접수된 경우 관련기준에 따라 조치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개선 필요 - 기명으로 접수된 경우 관련기준에 따라 조치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
	<p>구제는 개별적인 문제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할 필요</p>	<p>인권피해가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개선 필요 - 2020년도는 인권경영 실행 2차년도 해로 아직까지는 인권침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으나, 향후 인권침해 발생시 해당 인권 피해가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할 것에 대비한 각 경영 분야별 점검 실시
소비자 인권보호	<p>고객정보의 수집 및 관리 지침 개선 필요</p>	<p>개인정보 수집·처리 등을 조사하여 현실화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수정 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보완된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영구적인 실패메일 삭제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 설정



I. 기본연구사업 수행 [소관부서: 연구사업팀]

번호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연구원과 외부 위탁기관과의 계약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2	외부 위탁기관 선정은 차별의 요소 없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시행되고 있다.						
3	연구원은 연구 수행 과정에서의 외부 검토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잘 이행하고 있다.						
4	공동연구시 학술적 부가가치가 있는 현격한 기여를 한 외부연구진의 저자표시 등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5	연구자의 표절, 중복게재 등에 대한 연구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6	연구결과 확산시 홈페이지 게시, 보도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7	연구결과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다.						

번호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8	연구내용에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적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9	연구결과의 정책반영도를 높여 국민의 삶과 인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합 계							

Ⅱ.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수행 (소관부서: 경제정보센터 경제교육실)

번호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연구원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2	연구원은 교육서비스 제공시 외부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접수받고 있다.						
3	교육 진행시 교육에 불필요한 비용을 교육 참가자에게 전가시키지 않는다.						
4	교육 진행 중 교육대상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5	교육현장에 안전 및 재난 사고 대응을 위한 체계가 확보되어 있다.						
6	외국인 교육생이 포함된 경우 해당 국가의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는 등 차별적 요소를 사전에 점검한다.						인권경영위원회 검토의견 반영
7	외부강사가 교육생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적 발언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지시킨다.						인권경영위원회 검토의견 반영
8	교육내용에 인권 침해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인권경영위원회 검토의견 반영
합 계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점검결과 요약**

- '기본연구사업 수행' 관련 보완사항 필요 지표 확인
-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수행' 분야에서는 신규지표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

	분야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기본연구사업 수행		√			
2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수행		√			
합 계			2			

❖ **분야 내 항목별 평가결과**

- '기본연구사업 수행' 관련 1개 지표에서 보완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
-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수행' 분야에서는 인권경영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로 추가된 3건의 지표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

분야	세부지표 평가결과			
	세부 지표수	예	보완 필요	해당없음
1. 기본연구사업 수행	9	8	1	-
	9	8	1	-
2.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수행	8	5	3	-
	8	5	3	-
합계	17	13	4	-

❖ **“1. 기본연구사업 수행” 보완필요사항**

- 연구결과의 정책반영도를 높여 국민의 삶과 인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보완필요)
- 내부적으로는 보고서 검토 및 평가 시, 정책활용도 지표에 대해 평가하고, 외부적으로는 매년 시행되는 기관평가를 통해 국가정책 기여도를 평가받고 있음. 다만, 정책기여도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이 부족하

다는 인식 하에 국책연 제도개선 공동TF를 구성하여 정책연구 품질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기여도 평가를 통해 정책반영도를 제공할 예정

❖ “2.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수행” 보완필요사항

- 외국인 교육생이 포함된 경우 해당 국가의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는 등 차별적 요소를 사전에 점검한다.(보완필요)
- 외부강사가 교육생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적 발언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지시킨다.(보완필요)
- 교육내용에 인권 침해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보완필요)
- 외국인이 교육에 참여한 사례가 극히 드물어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으나, 향후 외국인 교육생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
- 향후 외부강사에게 강의 의뢰 시 인권 매뉴얼을 제공하고, 이를 숙지하도록 사전에 안내할 필요
- 교육자료 작성 시 인권 침해요소나 차별적 내용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인권경영위원회 검토의견]

- 외부 강사에 대한 인권 매뉴얼에 대한 교육도 현실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한국개발연구원 내부가 아닌 곳은 인권영향평가에서 소홀하기 쉬운 인권 사각지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교육 내용의 인권 침해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도록 점검하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겠지만, 나아가 피교육생의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과 도입도 요구됨.

❖ 2019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 중 “보완필요” 지표에 대한 개선 결과

분야	평가결과	개선계획	개선결과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연구원은 교육서비스 제공시, 외부 이용자의 불편사항 접수 필요	교육 완료 후 설문조사를 통해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차기 교육시 반영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종료 후 설문조사를 통해 불편사항 파악 후 차기 교육에 반영 -교육 중에도 수시로 불편사항을 접수하여 즉시 개선
	교육 진행 중 교육대상자가 요구하는 사항 처리 미흡	향후 담당자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발생 등을 상정한 대응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당자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즉시 대응하고, 대상자에게 결과 통지
	교육현장에 안전 및 재난사고 대응을 위한 체계 확보 필요	향후에는 교육시설 사전 점검 시 관련 시설 공급업체와의 논의를 통해 대응체계를 파악하여 담당자들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시행 전 안전 관련 사항을 사전 점검하고, 대응체계 파악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을 구비하고, 방역수칙 준수

III. 총평 및 권고의견

□ 총평

- KDI는 2020년 연구원의 4대 경영목표 중 한 가지인 ‘시대정신에 부응한 포용적 혁신성장 연구 선도’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세부전략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과제 개발 시스템 개선”을 두고 있으며, 연구원 운영의 근간을 다양하고 실질적인 연구수요자에 두고 핵심 과제의 기획을 위해 사회적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 확보와 함께, 정책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요자 및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노력
 - 또한, 연구결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하여 강화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사회적 公器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의 평가대상인 기관 운영과 대표 주요사업인 “기본연구사업 수행” 및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수행”에 있어, 인권리스크 예방을 위한 제도화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신규지표 마련을 통해 확인
- 2020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기본연구사업 수행’의 경우 총 8건의 지표에서 1건을 제외한 모든 평가 항목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음.
 - 보완사항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정책반영도 관련 지표’는 현재 연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연구 품질 제고방안’과 연계하여 향후 정책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에 있음.
 - 이외 7건에 대해서는, 기본연구사업이 연구원의 핵심사업인만큼 과제계획 단계부터 외부 공개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행과정에 있어 연구원이 외부 환경변화요인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결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수행'의 경우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보다 세밀한 지원서비스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세부 권고의견

○ 인권경영 체제 구축

- 2020년도는 인권경영을 실행하는 2차 년도의 해로,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이행지침 및 현장 마련 및 인권경영평가지 체크리스트에 대한 교육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경영의 내재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자발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권경영 실무부서의 홍보노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20년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관련 부서의 운영 현황과 이에 따른 답변 결과의 진위 여부가 적절하게 검증되었으며 이에 따른 개선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음. 하지만 2021년 개선 방안 마련 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보완 및 신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권경영 제도 및 현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온라인상 공간을 통해 홍보하고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되었을 경우 즉각적인 대처를 하기 위하여 각 경영 분야별 취약점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

○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수행

- 이제까지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 외국인도 교육에 참여한 사례가 극히 드물어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으나, 향후 외국인 교육생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
- 또한, 향후 외부강사에게 강의 의뢰 시 인권 매뉴얼을 제공하고, 이를 숙지하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교육자료 작성 시 인권 침해요소나 차별적 내용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시스템 구축

IV. 향후계획

- 체크리스트는 「인권경영 이행지침」 및 「인권경영 헌장」과 동일하게 5년마다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지표별 내부 개선 요구 및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등 외부요구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반영하여 개선함으로써 내부 직원 및 외부인을 대상으로 인권친화적인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 인권경영 실무부서인 제도기획팀은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나온 지표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실무부서와의 피드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권침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분야 전반에 걸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 붙임 :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표(답변결과 포함)
2. 주요사업 건설관리 부문 인권영향평가표(답변결과 포함)

[붙임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표(답변결과 포함)

□ 분야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소관부서: 제도기획팀)

항목	평가지표	답변	답변근거	
인권존중 정책선언	1	연구원은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인권경영헌장)을 했다.	예	- KDI 인권경영헌장 제정 【11월 27일 선포식 개최】
	2	인권정책선언은 연구원의 최고위 수준에서 표명된 것이다.	예	- 국민 및 직원과의 약속 실천과제로 원장 발표 【4분기 노사협의회 개최 이후 선포식 개최】
	3	연구원의 인권정책선언은 연구원 내부와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예	- 전문가 자문 및 부서별 의견수렴을 통한 FGI분석 후 연구원 최고회의기구인 연구운영위원회 최종 검토를 거쳐 인권경영헌장 마련 【산업정책연구원 자문, 2019.9】
	4	연구원의 인권정책선언은 연구원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인권 현안이 무엇인지가 표명되었다.	예	- 연구기관의 특성을 살려 연구 및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강조 【KDI 인권경영헌장】
	5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예	- 국민 및 직원과의 약속으로 노사협의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선언하였으며, 선언문에 대해서는 인트라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내·외부 공개 【인트라넷 및 연구원 홈페이지 게시판】
	6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예	- 연구원의 「인권경영 이행지침」 및 「인권경영 헌장」은 5년마다 KDI 인권현황 및 외부요인 분석을 통해 개정 후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개정함으로써 인권경영에 대한 실천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인권경영위원회 심의사항, 2020.10.8】
소 계				
인권영향 평가 정기적 실시	1	연구원은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예	- 2020년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안 승인 【2020.10.27】
	2	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연구원 내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예	- 결과보고서에 대한 자문을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의뢰 【인권경영위원회 회의를 통한 논의 및 심의, 2020.12】
	3	연구원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를 한다.	예	- 인권경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인권영향평가 등을 통해 잠재적·실제적 인권리스크를 평가하여 조치
소 계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1	연구원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예	- 연간 추진계획 수립·시행 【2020년 인권경영 실시계획안 승인, 2020.10.13】
	2	연구원은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	예	- 경영부원장실 제도기획팀을 인권경영

항목	평가지표		답변	답변근거
		부서를 설치한다.		전담부서로 운영 【KDI 인권경영 이행지침】
	3	연구원은 인권준수 감시장치를 마련했다.	예	- 인권경영정책 실행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기구인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2명 위촉 및 내부위원으로는 노사협의회 연구부서 대표위원 위촉 【KDI 인권경영 이행지침】
	4	연구원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예	- 인권경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인권영향평가 등을 통해 잠재적·실제적 인권리스크를 평가하여 조치 【2020.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안)(2020.10.27)】
소 계				
구제절차 마련	1	연구원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예	- 갑질피해 신고·지원제도, 성희롱·성폭력 고충신고제도, 민원제도 등 주요 사안별로 구제절차 마련
	2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예	- 연구원 홈페이지, 인트라넷 등을 통해 구제절차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이용 접근성 제고 - 인권침해 발생시 사안에 따라 1단계(기본절차)와 2단계(고도화 절차)에 따라 구제절차를 달리 적용함으로써 신속성 제고
	3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보완 필요	- 기명으로 접수된 경우 관련기준에 따라 조치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
	4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보완 필요	- 2020년도는 인권경영 실행 2차년도 해로 아직까지는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으나, 향후 인권침해 발생시 해당 인권피해가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할 것에 대비한 각 경영 분야별 점검 실시

□ 분야 2. 강제 노동의 금지 (소관부서: 인사팀)

항목	평가지표		답변	답변근거
강제노동 금지	1	연구원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예	- 연구원 복무규정 제13조(근무시간)
	2	연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직원이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예	- 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재임용), 임용 및 승진규칙 제3조의2(임용계약기간), 개인별 임용계약서 등
	3	연구원은 직원의 행동을 제약할 목적으로는 각종 신분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	- 연구원은 주요 출입구 통과시 보안 등을 이유로 신분증을 태그 후 출입을 하고 있으나, 행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4	연구원은 직원이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 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예	- 연구원 복무규정 제22조의2(보상휴가제), 제수당 지급규칙 제13조(연장근로수당의 신청), 제14조(연장근로의 제한)
	5	연구원은 직원을 폭행, 협박, 감금	예	- 연구원 행동강령 제11조(공정한 직무수행

항목	평가지표	답변	답변근거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강제 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6	연구원은 직원에게 부채를 안긴 후 빚을 담보로 한 강제근로를 실시하지 않는다.	예	- 연구원 행동강령 제11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7	직원은 합리적 수준의 사전 통지 이후에 연구원을 그만 둘 수 있다.	예	- 연구원 복무규정 제17조(사무인계), 연구원 전자문서(사직원) 참조(퇴직희망일, 사유, 이직처만 작성)
8	임신, 기저질환, 자녀돌봄 등으로 코로나 대응에 취약한 직원을 배려한 인사·복무제도를 운영한다. (신규 지표)	예	- 코로나19 대응 복무지침으로 재택근무를 정부 기준(1/2~1/3수준) 운영

□ 분야 3. 아동노동의 금지 [소관부서: 인사팀]

항목	평가지표	답변	답변근거
연소자 고용 금지	1 연구원은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예	- 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8조(연구직 임용 기준)부터 제11조(행정직 임용기준) 및 '직원 채용업무 기준' 서류평가 시 교육 사항, 학점 등 계량평가
	2 연구원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예	- 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8조(연구직 임용 기준)부터 제11조(행정직 임용기준) 및 '직원 채용업무 기준' 서류평가 시 교육 사항, 학점 등 계량평가
	3 연구원은 교육프로그램을 병자하여 고용이 금지된 연소자를 고용하는 일이 없다.	예	-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연소자 채용 금지
	4 연구원은 서류를 통해 대상자의 나이를 확인한 후 고용하며, 신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확실성을 검토한다.	예	- 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구비서류)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 분야 4. 산업안전 보장 [소관부서: 시설팀/운영지원팀]

항목	평가지표	답변	답변근거
사무실 안전	1 연구원은 사무실의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한다. (시설팀)	예	- 관련법령에 의해 안전검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전담인력 14명을 통해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음. · 연간 건물 정기점검 2회 실시 · 연간 소방시설 점검 2회 실시
	2 연구원의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있지 않으며, 항상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시설팀)	예	- 소방안전관리자가 수시로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음.
	3 연구원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음용수, 세면대, 의자, 음식보관시설, 숙소,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시설팀)	예	- 창문을 통한 자연 환기와 공조기를 통한 강제 환기를 적절히 조합하여 외부 공기 유입(거의 대부분의 실에 창문 있음) - 기준에 맞는 조도량으로 설계와 시공 실

항목	평가지표	답변	답변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 - 생수업체로부터 깨끗한 생수 공급받고 있음. - 청소전담인력 14명이 주기적으로 연구원 내 청소 실시
	4	연구원은 유해물질로부터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치한다. (시설팀)	<p>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외부 공기를 차단하고, 각 실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활용하여 공기정화 - 청소전담인력 14명이 주기적으로 연구원 내 청소 실시 - 연구원에서는 유해물질을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연구원 주변에 유해물질 발생원이 있지 않음.
	5	정부의 방역방침을 준수하여 사업장 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시설팀) (신규 지표)	<p>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비말방지 칸막이를 설치하여 감염 예방 •실내동호회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등을 폐쇄하여 다수의 직원이 모이는 것 방지 •주출입구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여 모든 출입자에 대해 열 체크 •주기적으로 소독 및 방역을 하고 있으며, 다수가 만지는 손잡이 등에 향균 필름을 부착하고 주기적으로 교체
교육, 건강진단 등	1	연구원은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운영지원팀)	<p>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령에 따라 전기안전관리교육, 승강기안전관리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
	2	연구원은 직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운영지원팀)	<p>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 복지후생 규정 제6조(건강진단)에 따라 전직원 건강검진 실시
	3	직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코로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운영지원팀) (신규 지표)	<p>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인사혁신처의 코로나19 방역조치·복무지침에 따라 자체 지침 마련 시행 - 방역물품(열화상카메라, 체온계, 손소독제 등) 비치

□ 분야 5. 소비자인권 보호 [소관부서: 미디어운영팀]

항목	평가지표	답변	답변근거
고객 사생활 보호	1	연구원은 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연구원이 수집.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p>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2013년)을 수립하고 수정된 내용이 있을 시 이를 반영하여(2020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 웹필터를 사용해 보안처리 【개인정보 웹필터】
	2	고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공개되었다.	<p>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I 개인정보처리방침 홈페이지 공개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2014년)을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항목	평가지표		답변	답변근거
				- 수정 및 보완한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영구적인실패메일 삭제(2020년)
	3	고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예	- KDI 개인정보처리방침 홈페이지 공개
	4	고객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보완 필요	- KDI 뉴스레터 가입 등 고객에게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받고 있음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서비스 활용 동의에 대한 내용을 이용자에게 안내하여 선택적 수집 하도록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음
	5	고객 정보는 소비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예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하였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음
	6	고객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예	- 개인정보 웹필터를 사용하여 보안처리 -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대장 운영 - 연2회 개인정보 노출점검 실시

□ 분야 6. 직원인권 보호 [소관부서: 인사팀/운영지원팀]

항목	평가지표		답변	답변근거
폭력 예방과 구제 조치	1	연구원은 나이, 성별 등을 이유로 직원에게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인사팀)	예	-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직원에 대한 일체의 폭력을 금지 - 임직원간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윤리 확립
	2	연구원은 규정에 없는 징벌적 성격의 교육훈련을 수행하지 않는다. (운영지원팀)	예	-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일체의 징벌적 교육훈련을 시행하지 않음. -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 【복무규정 내 직장내괴롭힘 조항】
	3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인권침해를 다루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인사팀)	예	- 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대처를 위한 주체별 대응 매뉴얼 참조
	4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인권침해를 다루는 구제절차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 (인사팀)	예	- 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대처를 위한 주체별 대응 매뉴얼 참조
	5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운영지원팀)	예	- 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8조(예방교육)에 따라 연 1회 이상 전직원 교육 실시

[붙임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표(답변결과 포함)

【이슈 1】 기본연구사업 수행 [소관부서: 연구사업팀]

번호	지표	답변	답변근거
1	연구원과 외부 위탁기관과의 계약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예	-연구원 회계규정 내에 계약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을 준수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외부 위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국가계약법】【회계규정】
2	외부 위탁기관 선정은 차별의 요소 없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시행되고 있다.	예	-국가계약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을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에 따른 위탁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연구용역규정에 정한 바를 따르고 있음. 【국가계약법】【회계규정】【연구용역규정】
3	연구원은 연구 수행 과정에서의 외부 검토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잘 이행하고 있다.	예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4번의(연구과제 제안·중간·최종 세미나, 보고서 검토)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제도화하고 운영하고 있음. 【연구사업 선정·관리 및 연구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연구보고서 발간위원회 운영요강】
4	공동연구시 학술적 부가가치가 있는 현격한 기여를 한 외부연구진의 저자표시 등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예	-연구윤리지침 및 연구진실성검증지침을 규정하여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부당한 저자표시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외부연구진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연구윤리지침】
5	연구자의 표절, 중복게재 등에 대한 연구윤리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예	-연구윤리지침 및 연구진실성검증지침을 규정하여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통해 자체점검 절차 및 외부연구자 관리를 강화하였음. 【연구윤리지침】【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연구과제 개선방안】
6	연구결과 확산시 홈페이지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	-연구원에서 생산하는 모든 연구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및 디지털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연구결과를 확산하고 있음. *디지털콘텐츠: 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 *오프라인: 세미나, 정책토론회, 경제교육, 연구성과 나눔행사 등을 통한 확산 *온라인: 홈페이지, 뉴스레터, 소셜 및 외부기간 플랫폼(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등)을 활용한 확산 *언론보도
7	연구결과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다.	예	-연구보고서의 핵심을 요약한 자료(KDI FOCUS, KDI 정책포럼, 현안분석) 제공 및 5분 이내의 영상보고서,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태의 요약 자료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

번호	지표	답변	답변근거
8	연구내용에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적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	-인권경영 헌장 선포를 통해 연구내용에 인권 침해가 포함되지 않도록 연구진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으며, 특히 인간대상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생명윤리위원회 사전 심의를 통해 과제 기획 시부터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음. 【인권경영헌장】
9	연구결과의 정책반영도를 높여 국민의 삶과 인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보완 필요	-내부적으로는 보고서 검토 및 평가 시, 정책활용도 지표에 대해 평가하고, 외부적으로는 매년 시행되는 기관평가를 통해 국가정책 기여도를 평가받고 있음. -다만, 정책기여도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이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국책연 제도개선 공동TF를 구성하여 정책연구 품질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기여도 평가를 통해 정책반영도를 제공할 예정임. 【연구보고서 발간위원회 운영요강】

【이슈 2】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수행 (소관부서: 경제정보센터 경제교육실)

번호	지표	답변	답변근거
1	연구원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예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교육이수증 발급 등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생년월일)만 요구하고, 목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
2	연구원은 교육서비스 제공시 외부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접수받고 있다.	예	교육완료 후 설문조사를 통해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차기 교육 시 반영해 개선. 또한 교육 중에도 수시로 불편사항을 접수받아 개선
3	교육 진행시 교육에 불필요한 비용을 교육 참가자에게 전가시키지 않는다.	예	모든 교육이 무료 또는 교육 의뢰기관의 부담으로 진행되므로 교육 참가자에게 별도의 비용 청구 불필요
4	교육 진행 중 교육대상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예	교육생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판단하여 적법하게 처리. 향후 담당자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발생 등을 상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
5	교육현장에 안전 및 재난 사고 대응을 위한 체계가 확보되어 있다.	예	안전이 확보된 교육시설을 임차하여 교육을 수행하며, 사전 시설 점검 등을 통해 안전 체계와 대응방안 등을 미리 파악. 감염병 확산 대비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
6	외국인 교육생이 포함된 경우 해당 국가의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는 등 차별적 요소를 사전에 점검한다. (신규지표)	보완 필요	외국인이 교육에 참여한 사례가 극히 드물어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으나, 향후 외국인 교육생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
7	외부강사가 교육생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적 발언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지시킨다.(신규지표)	보완 필요	향후 외부강사에게 강의 의뢰 시 인권 매뉴얼을 제공하고, 이를 숙지하도록 사전에 안내
8	교육내용에 인권 침해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신규지표)	보완 필요	교육자료 작성 시 인권 침해요소나 차별적 내용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시스템 구축